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5211723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78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521172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윤문수, 안은진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C

2. D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유한)

담당변호사 이강길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1.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등의 지위

- 1)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보조참가인 E'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3) 피고보조참가인 D는 피고보조참가인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8. 6. 26. 피고보조참가인 E에 서울 관악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6. 27.부터 2018. 12. 10.까지, 계약금액 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 E은 2018. 6. 27. 주식회사 G1) 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8. 6. 27.부터 2018. 12. 10.까지, 계약금액 53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E과 피고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피고보조참가인 E은 2018.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하고, 2018. 8. 2.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E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61,600,000원

보험기간: 2018. 6. 26. ~ 2018. 12. 10.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관악구 H

계약기간: 2018. 6. 27. ~ 2018. 12. 10.

계약체결일자: 2018. 6. 26.

계약금액: 616,000,000원

보증금율: 10%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주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20조(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라.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 E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및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1) 피고보조참가인 E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18. 12. 10.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9. 3. 29. 피고보조참가인 E에게 ‘2019. 4. 6.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함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 E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8.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4, 42,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

1)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9 내지 41, 43 내지 47, 49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20조는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험사고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최후공정을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을나 제2호증), 특약사항(갑 제2호증의 2), 피고보조참가인 E과 G의 실질적 대표 J가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진사항 및 자금요청안(갑 제8호증의 1), 공사예정공정표(갑 제8호증의 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는 골조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내장공사 외에도 설비공사(전기, 수도, 가스 등 공사), 인테리어공사(목공, 도배 등), 타일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벽체, 천정, 바닥), 조경공사, 마감공사(주방 및 가구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보조참가인 E과 G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이 훨씬 지난 2019. 2. 중순 무렵 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마감공사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사람이 사는 거주시설에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 및 주방 시설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보조참가인 E 및 G의 공사 중지 이후 현장의 사정이 사람이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 E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2019. 2. 15. K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9. 3. 중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19. 5. 13.에야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의 약 20%를 초과하는 합계 129,964,780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보조참가인 E이 2019. 4. 1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고, 원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K이라는 사람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9. 2. 중순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 공사 등을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고 완료하였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과 I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I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I은 피고보조참가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G(실질적 대표 J)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 대부분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E의 대표이사 피고보조참가인 D는 2018. 12.경부터, G의 실질적 대표 J는 2019. 2. 중순경부터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도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이 2019. 2. 중순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2019. 4. 20.까지 피고보조참가인 E 또는 G의 실직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I의 위 진술은 I이 종전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사였던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일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I의 증언이나 I이 작성한 공사작업일보(올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E이 준공코드를 입력하여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되었고, 이 사건 건물 건축물대장에 피고보조참가인 E이 공사시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 E에 의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 E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의무 이행 여부는 피고보조참가인 E이 실제로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인 점, 피고보조참가인 E이 준공코드를 입력하여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고보조참가인 E이 공사시공사로 기재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한 원고의 필요와 이 사건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고보조참가인 E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사 중단에 관한 귀책사유의 소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E 및 G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청구한 공사대금을 G 및 그 실질적 대표인 J에게 지급해 왔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E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위 계약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한 2019. 2. 중순 무렵 기준으로 공사타절 합의서, 공사계약해지 합의서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E에 2019. 3. 29.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9. 4. 6.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 E 또는 G가 공사를 중단한 원인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이들 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한 거래업체의 공사 중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보조참가인 E이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E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이 원고가 기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E의 기성대금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보조참가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보조참가인들은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위 보험금 채권과 상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 E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 E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E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을 뿐 확정적인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9. 3. 29. 피고보조참가인 E에게 ‘2019. 4. 6.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함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 E에 도달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서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할 것인데, ①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처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것과 해제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유효성도 인정되는 점(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사계약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으로 보아서 피고보조참가인 E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정해제권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 E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3. 29.자 정지조건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9. 4. 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2019. 3. 29.자 계약해지통보에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 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보험금 지급 범위

1) 피고보조참가인 E이 2019. 2. 중순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 후 원고의 공사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E의 공사 미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9. 4. 6.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실손해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액범위 내에서 그 실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초의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560,000,000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은 503,920,000원이므로, 그 차액인 56,080,000원이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위 잔여 공사금액인 56,080,000원보다 73,884,780원이 늘어난 129,964,780원의 계약금액으로 K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나머지 미시공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K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129,964,78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위 지출내용에 허위 또는 과다 계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과 위 K과의 공사계약의 공사범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은 피고보조참가인 E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공사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위 73,884,7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61,600,000원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약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기를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2019.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5.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고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가 요청할 경우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피고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피고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제5조 제3항)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험금청구를 받은 때부터 보증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보증사고의 종류와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보증사고 관련자들의 조사에 대한 협력 여부, 피고가 보증금 청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계약보증책임 부인의 통지를 한 날이 2019. 8. 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행지체에 빠지는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2019. 5. 28.부터 2개월이 지난 2019. 7.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 제1, 3항은 주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변경, 금액, 기간 등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피고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고는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보조참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당초 2018. 12. 10.에서 2019. 1. 15.로, 다시 2019. 2. 20.까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의 승인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가 주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변경, 금액, 기간 등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서면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서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E의 준공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동일성을 파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보조참가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원고가 준공기한 연장신청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조치로 공사가 더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준공기한 연장으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당초와 다르게 2019. 1. 15.이나 2019. 2. 20.이었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수수료액을 달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피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금지급특별약관 제2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 규정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

1)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2) 앞서 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되지 않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다.